#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의 구조와 내용

2007.8.24 한국제도경제학회 정순섭/홍익대 법학과

## 목차

- 1. 기본방향
- Ⅱ.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 Ⅲ. 업무범위의 확대
- IV. 투자자보호의 강화
- V.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 Ⅵ. 역외적용
- VII. 자율규제제도의 개편
- VIII. 과제와 전망

# 1. 기본방향

## 1. 경과

- ■통합금융법 논의(03.3~04.12)
  - 03년 이후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른 금융법체제 개 편 논의의 성과
    - ■03년 통합금융법 논의는 금융관련법률을 진입•업무영역, 건전성•자산운용, 영업행위, 퇴출•구조개선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것을 목표
    - ■은행/증권/보험의 3대 권역을 모두 포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영업행위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관련법의 통합을 우선 추 진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재정경제부, 06.2.17)
-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 (금융법센터등, 06.4.26외 4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재 정경제부, 06.6.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재정경제부, 06.12.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국회, 07.7.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 (07.8.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09.2.4)

## 2. 기본방향

-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기능 제고
- ■국내산업특성/시스템위험관리와 금융시장기능
- ■「은행업」과「보험업」을 직접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음
  - '투자성'을 가진 은행업무와 보험업무에는 직접 적 용

- ■부칙 제2조(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증권거래법]
  - 2. [선물거래법]
  -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4. [신탁업법]
  -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나. '금융기능'을 기초로 한 기능별 규제로 전환
- ■현행 법제는 기관별 규제에 기초
-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
  - 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의 공백 제거
  - 자본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의 유도
- ■기능의 범위가 문제
  - 자금법은 투자로 한정
  - Cf. 은행: 저축과 대출, 보험: 위험관리

- 다.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포괄주의로의 전환
- 현행법상 '유가증권' 정의의 제도적 기능
  - '증권거래법의 입구'
    - 증권업의 범위와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정
- 한정적 열거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정의의 한계
  - "금지적 규제" ⇔ 증권업의 범위
  - "규제의 공백" ⇔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 ≒ 투자자보호의 공백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도입
  - 업무범위의 확대
  - 투자자보호의 공백 제거

- 라.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
-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의 공급
  - →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분쟁 확대 가능성
- ■금융혁신의 성과를 분쟁해결비용으로 소진하는 것을 방지
- 금융상품의 복합화·다양화의 전제

- 마. 사전적·행정적 규제를 사후적·사법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
- ■종래의 사전적·행정적 규제는 포괄주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화하는 룰의 사전 적 명시와 분쟁해결절차의 간이화가 필요

## 통합 전후의 금융규제법체계

#### 〈 현행 금융법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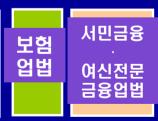
파생상품 거래 (장<u>외</u>파생 **인행법**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법 자산 운용 업법 서민금융 비정형 보험 신탁 업법 종금 업법 <u>간접</u> 투자 업법 여신전문 법 금융업법 :::::: 부분은 현재 투자자 보호 법제가 없는 부분



#### 〈통합 후 금융법 체계〉

인 행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 3. 적용범위

가. 개관

-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
- ■거래상대방으로서의 투자자의 분류도 기준
  - 투자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규제의 적용범위 차별 화

- 나.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
  - 증권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다. 금융투자업

- ■경제적 실질에 따라 6 가지로 구분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 라. 금융투자업자

-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 체제로 전환
  - 금융기능별로 진입 요건을 마련
  - 필요한 인가단위 추가로 업무영역 확장(add on 방식)
- ■진입규제의 단계
  - 1단계: 금융투자업의 선택
  - 2단계: 금융투자상품의 선택
  - 3단계: 투자자의 선택

- ■인가제와 등록제의 병용
  -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를 기준
  - 고객과의 직접적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고객의 자 산수탁여부 등이 기준
- ■인가제와 등록제의 운용
  - 인가업무단위, 등록업무단위
  - 인가 등록의 취소
  - 전부 양도·양수/폐지: 제417조(승인사항)
  - 일부 양도·양수/폐지: 제418조(보고사항)

## 마. 투자자

-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 규제상 보호의 정도를 차별화
- ■구분기준은 투자자의 투자위험감수능력
  - 투자지식과 경험 등을 기초로 한 전문성과 자산 및 거래규모 등으로 평가

-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 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 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 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1.**쿸가
  - 2. 한국은행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4. 주권상장법인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 11.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구조〉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는 법률안 <u>제3조</u>와 <u>제4조제1항, 동조</u> <u>제3항 내지 제8항</u> 및 <u>제5조</u>의 누적적 적용으로 확보
  - 제1단계
    - 법률안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해당하는가?
    - 예 → 제2단계
    - 아니오 → <1> 예금 혹은 보험(금융투자상품과 예금 보험의 구분) <2> 비금융상품
  - 제2단계
    - 법률안 제4조제1항의 증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해당하는가?
    - 예 → 제3단계
    - 아니오 → 파생상품(파생상품과 증권의 구분)
      - 장내 → 장내파생상품
      - 장외 → 장외파생상품
  - 제3단계
    - 법률안 제4조제3항 내지 제8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증권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 <2> 투자계약증권 cf. 집합투자기구(법률안 제9조제17호)
    - <3> 파생결합증권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일반적 정의
  - 금융투자상품(법률안 제3조)
- ■명시적 포함
  - 증권(법률안 제4조)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
  - 파생상품(법률안 제5조)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명시적제외
  - 제3조제1.2호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법률안 제7조)

## 1. 금융투자상품

- 가. 의의
-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중심개념
-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
  - "투자"의 요소를 정의하는 방식이 문제
  - 목적, 위험, 금전의 이전, 계약상 권리의 4 가지 요 소로 구성
- 3단계 정의
  - <1단계> 일반적 정의
  - <2단계> 명시적 포함
  - <3단계> 명시적 배제

법제3조(금융투자상품)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 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투자성의 요소

- ① (목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② (금전이전)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을 이전을
- ③ (계약)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서
- ④ (위험)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당해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

## 나.목적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
  - 파생상품 기타 신종증권

## 다. 금전의 이전

- ■현재 또는 장래의 금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
  - 금전의 이전 시점이 현재: 증권
  - 금전의 이전 시점이 장래: 파생상품
- 라. 계약상 권리
- ■계약상의 권리
- ■신용위험과 같은 계약외적 요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은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요소에 불포함

### 마. 위험

- ■'원본 손실이나 추가지급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
  -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당해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한다)이 있는 것"
    - ■지급금액이 수취금액 보다 클 위험
      - 주로 시장위험(가격.이자율.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 ■전통적 예금 및 보험과의 구분 기준

## ■투자성의 판단

## -지급금액 - 수취금액 > 0

- ■지급금액(취득원본): 특정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계약의 만기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
- ■수취금액(처분원본): 특정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계약의 만기까지 수취한 금액의 합계
- 공제(합산)금액
  - ■일정한 금액을 취득원본으로부터 공제하거나 처분원본에 합산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 ■예금의 중도해지수수료
  - ■보험계약의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 비 등)
  - ■세금공과

### 바. 명시적 포함

- ■법제3조(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 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
  -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 나. 장외파생상품

### 사. 명시적 제외

- ■법제3조(금융투자상품) ①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제 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 의 수익권

#### 2.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가. 분류

- 증권과 파생상품
  - 추가지급 의무("100% Rule")
  - 증권형에만 적용
  - Cf. 옵션의 매입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 거래 장소

원본 손실범위	손실≦0%	0%<손실≦100%	100%<손실
	<원본보전형>	<원본손실형>	<추가지급형>
상 품	비투자 (예금· 보험)	증 권	장외파생상품

- 나. 증권-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 (1) 개관
- ■전통적인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
  - 포괄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
- 간접투자기구의 개념 확대

#### (2)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법제4조제7항)
  -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8호 일반화
  - 상법상 사채의 개념에도 포함될 전망

- ■법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금융투자상품
  -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 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Cf.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 14조(파생금융거래) 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 왑거래를 말한다.
  -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 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3)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법제4조제6항)
  -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 념의 도입
  - Howey 기준에 따른 정의
- ■집합투자와의 구분

- 다. 파생상품-기초자산의 확대
- ■기초자산의 종류를 확대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동일
- ■보험계약과의 구분
- ■도박과의 구분

### 3. 파생상품

### 가. 파생상품의 정의

- Building Block Approach
  - 선도(forwards)형
  - 옵션(options)형
- 법률상 정의
  - 선도/옵션/스왑
  - 스왑?
    - ■선도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 첫째, 파생상품 중 거래량이 가장 많고,
      - 둘째, 파생상품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가 스왑을 중심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여
    - ■별도로 정의

#### - 선도(forwards)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 옵션(options)

■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 스왑(swaps)

■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법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 다.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구분
  - 거래장소를 기준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것" (법 제5조제2항)
      -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 하는 시장" (법 제9조제14항)
      - 해외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 어지는 시장" (법 제5조제2항)
  -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법 제5조제3항)

- ■법 제5조(파생상품) ②이 법에서 "장내파생상 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 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나.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 "전액지급의무"와 "추가지급의무부재요건"
  -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그 존속 기간 동안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적인 지급의무 (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법 제4조제1항)
- Cf. 옵션의 매입의 경우
  - 손실가능액이 프리미엄으로 한정

### ■위험을 기준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이브 소시H이	손실≦%	0%<손실≦100%	100%<손실
원본 손실범위	<원본보전형>	<원본손실형>	<추가지급형>
상품	비투자 (예금· 보험)	증 권	장외파생상품

# 다. 기초자산의 확대 (1) 취지

-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주의 취지를 반 영(법제4조제10항)
- (2) 관련 법률문제
-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문제 발생 가능성
  - 보험계약과의 구분
  - 도박과의 구분
  - 규제대상업무의 확대
  -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파생상품과 보험계약의 구분
  - 파생상품이 등장한 '80년대초부터 논의되어 왔지 만, '90년대초 신용파생상품의 등장과 함께 논의 본격화
  - 이론상 ①위험헤지수단의 차이, ②피보험이익의 요부 등이 양자의 구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양자는 발전경로와 경제적 기능, 고객층의 구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 채 병존적으로 발전 하는 시장으로 이해
    - ■파생상품과 보험업법의 관계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법적 위험으로 인식
    - ■완전한 해결은 영국식 금융통합법에서 가능

- 파생상품과 도박의 구분
  -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특히 장외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복합화와 다양화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수반
  - 특히, 기초자산의 종류와 레버리지의 수준에 따라서 도박으로 인식될 위험이 증가
  -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으로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법 제10조)
    - ■금융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에 따른 법적 위험의 제거 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영국 FSMA, s412. Cf. FS Act, s63; 미국 CFMA, Title IV 7 USC s 27f(c); 호주 FSRA, s1101l; 일본 증권거래법 제201조, 금융상품거래법 제201조

- 규제대상업무범위의 확대
  - 현행 증권거래법상 기초자산은 유가증권, 일반상 품, 신용위험으로 한정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은 규제의 대상 외임
  - 자금법상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러한 업무가 규제대상업무에 포함됨

-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부동산 등 유형 실물자산(tangible deliverable asset)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에 의한 구매와의 구분기준이 필요
    - ■영국의 경우 선도거래(futures)에 있어서 투자목적과 상업목적을 구분하여 "투자목적이 아닌 상업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권리"(rights under any contract which is made for commercial and not investment purposes)는 금융상품 정의에서 배제하고있음
    - ■호주의 경우 차액결제의 금지를 조건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매 매를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배제
  - (i) 법률상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안과 (ii) 해석에 의하 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감독실무상 해석운용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되지만, 필요한 경우 법률안 제7조제6항제3호를 활 용할 수 있을 것

## 4. 집합투자

- 가. 개념의 명확화
- ■집합투자의 기준
  - 제6조(금융투자업)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함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 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 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 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 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을 말한다.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 ■명시적 배제 근거의 도입
  - 제6조(금융투자업) 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것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
  -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 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 다)
-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 라 한다)
-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 라 한다)
-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 이라 한다)
-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 나. 운용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 ■제6조(금융투자업) ⑤···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

## 다.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의 완화

- ■제6조(금융투자업) ⑤···<u>취득.처분 그 밖의 방</u> 법으로 운용하고 ···.
-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라.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제57조, 제81조제 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 7항, 제239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40조제3항 내지 제9항, 제 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II. 업무범위의 확대

### 1.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확대와 업무범위

- ■금융투자상품개념은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확대에 따라 금융투자업 의 범위도 확대됨

### 2. 금융투자업무의 본체겸영범위의 확대

- ■금융규제에서는 이해상충방지의 대원칙만을 선언하고, 조직규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함
- ■자금법에서는 일정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널리 인정

#### 3.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 법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 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4.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 ■법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 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5. 타금융업종의 금융투자업영위

- 투자성있는 예금과 보험
  - 제394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8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9조내지 제54조, 제56조 및 제3편제1장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편제1장은 은행이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 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8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9조 내지 제54조 및 제56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의 영위

- 제5조(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 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인가 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 행일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 4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II.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

### 1. 개관

- ■기능별 규제의 핵심과제
  - 포괄주의 규제 도입의 전제
  - 규제공백의 제거
  - 투자자보호의 강화
- ■자금법상 투자자보호장치 개관
  - 영업행위규제
    - ■투자권유규제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불초청권유금지 등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규제
    - ■투자광고규제
  - 이해상충 방지체제 도입

### 2.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 가. '투자권유'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법제9조제4항)
- ■구분: '투자광고'
  - -(1) 특정 불특정
  - -(2) 통신수단의 실시간성

### 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를 권유하도록 하는 원칙(suitability rule)
- ■적용범위
  - 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내용

-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분류확인의무(법제46조 제1항)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내용

- 'Know-Your-Customer-Rule' (법제46조제2항)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 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 면으로 확인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의 서면확인을 받아 이 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투자권유의 금지 (법제46조제3항)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당해 일반투 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반 세 제재

- 법제46조제1항, 제2항 위반
  - 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増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파악.서면 확인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6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나. 설명의무의 부과

- 설명의무의 명시적 규정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 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법 제47조)
    - ■금융투자업자
    - ■일반투자자
    - ■투자권유
  - 제47조(설명의무) ①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일반사법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를 사전에 명확화하는 규정

# ■설명사항

-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설명하 여야 할 의무 (법 제47조)
  - ■제47조(설명의무) ①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일본

- ■원본손실 여부
- ■원본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구조
- ■원본초과손실 여부
- ■원본초과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구조

- "거짓 설명"과 "중요한 사항의 누락"
  - ■제47조(설명의무)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명정도

- "투자자가 이해하도록"(법 제47조제1항)
  - ■제47조(설명의무) ①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 ■제47조(설명의무)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 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 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설명방법
  - 별도 규정 없음
  - 적합성 원칙의 고려

- ■위반시 행정제재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 ■적합성원칙 위반과 동일
    - **■**[별표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 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 - 과태료

- ■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3.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반시 민사제재

- 손해배상책임의 추정
  - ■현행
    - 설명의무 위반의 존재 (입증)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입증)
    - 의무위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
  - ■개정
    - 설명의무 위반의 존재 (입증)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추정)
    - 의무위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당해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해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다.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규제 (법 제49조제3호, 제4호)
  - 투자권유금치
  - 재권유금지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위반 세제재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 ■적합성원칙 위반과 동일
  - **■**[별표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48.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과태료

- ■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4.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

# 라.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

- ■투자성있는 예금
  - 제77조(투자성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은행이 투자성있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8조 내지 제45조,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5조및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제외: 제49조제3호(불초청권유의 금지)

# ■투자성있는 보험

- 제77조(투자성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②보험회사(「보험업법」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8조 내지 제45조,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5조,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제외: 제49조제3호(불초청권유의 금지)

# 마. 투자권유대행인제도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가 아닐 것
    -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 규제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②투자권 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검사 및 처분)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 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 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6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사법상 책임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⑤ 민법」 제756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 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 다.

## 3.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투자자 보호
- ■투자광고
  -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법 률안 제57조제1항)
  - 광고와 권유의 구분?
- 광고의 주체(법 제57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
  - 협회
  -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에 한 정)

## ■광고의 내용

- 적극적 규제: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포함 (법 제57조제2항)
- 소극적 규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적극적 규제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 의 사항 금지 (법 제57조제3항)
- 소극적 규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 금지(법 제57조제2항)

# ■위반시 제재

- 형사제재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행정제재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 적합성원칙 위반과 동일
  -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60. 제57조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 4. 이해상충의 방지

- ■이해상충상황의 다양화
  - 동일 법인 내에서 복수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이해상충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 음
  -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이 허용되면 발생가능성이 증 가할 수 있음

- ■이해상충방지체제의 구축
  - 공시(disclosure) 및 절차적·구조적 의무 부과
    - ■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1)관리의무의 부과
      - ②투자자에 대한 고지 및 최소화 후 거래의무
      - ③최소화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단념의무
    - ■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정보차단장치, 임원겸직금지의무,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금지의무, 기타 이행상충가능행위 금지의무

# ■위반 세제재

- 행정제재
  -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43. 제44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 4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행정제재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처분
  -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 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43. 제44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 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2.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IV. 불공정행위 규제의 개선

- 1. 개관
-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
- ■시세조종 규제의 확대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개선
- ■일반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 2. 내부자거래규제의 강화

- ■금지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
  -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 권도 포함
- ■금지 대상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도 포함

## 3. 시세조종규제의 강화

- 현물거래와 선물거래 양방향의 시세조종 행위를 모두 금지
  - 현행법상 장내파생상품시장 이익 목적의 현물시장 시세 조종을 금지
  - 현물시장 이익 목적의 장내파생상품시장 시세조종도 금 지하는 것으로 개선
-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간 양방향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
  - 파생결합증권에서 이익 목적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 조종
  - 기초자산인 증권의 이익 목적의 파생결합증권의 시세조 종

# V. 역외적용

#### 1. 현황

- 국경간 거래의 확대에 따른 역외집행의 필요성 증대
  -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등
  - 원활한 감독공조를 위한 전제조건
  - 국경간 거래의 확대와 국내 투자자 보호
- 국내법의 국제적 효과
  - 솔지주의
  - 효과주의
- 외국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시설(지점, 영업소 등)을 갖추어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증권제28조의2, 선물제37조3항, 간접156)
  - 다만, 외국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0조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①외국투자자문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 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 방법
  - 2. 국내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방법

- 보험업법시행령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하보험계약·수입적 하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장기 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2. 개선

- 효과주의에 따른 역외적용 규정의 명시
  -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 한다.
      -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안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 함한다)
-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대상
- 해석상 민사, 행정, 형사로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필 요

# VI. 자율규제제도의 개편

- 자율규제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법제283조(설립) ①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 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 법제286조(업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시 장의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분쟁조정, 전문인력 운용관리 등
    -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부칙 제3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제162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 VII. 과제와 전망